

7.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

대통령령 제16,556호 1999. 9. 18

개정이유

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·의료비공제 등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가.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교육비공제대상에 추가된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의 학원 수강료의 범위를 유치원과 동등한 수준인 1일 3시간 이상, 1주일 5일 이상인 교습과정을 받고 지출하는 학원수강료로 정함(령 제110조의3제4항).
- 나. 고액재산가에 대한 적정한 세부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함(령 제166호)
- 다. 근로소득공제·의료비공제 등이 확대됨에 따라 매월분 급여자급시에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간이세액표를 조정하고, 아울러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1999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초과징수금액을 9월 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.(령 부칙 제4항 및 별표 2).